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297호

방배동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·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초구 방배동 1015번지 일원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9월 5일
서울특별시장

I. 정비구역의 지정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방배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정비구역 명칭	위치	면적(㎡)	비고
신규	방배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서초구 방배동 1015번지 일대	33,024.0	-

3. 정비계획 결정

가. 토지이용계획

구분	명칭	면적(㎡)	비율(%)	비고
합계		33,024.0	100.0	
정비기반시설	소계	1,057.25	3.2	
	도로	1,057.25	3.2	
획지	소계	31,966.75	96.8	
	획지	31,966.75	96.8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나. 용도지역 · 지구 결정조서

- 1) 용도지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면적(㎡)	구성비(%)
주거지역	합계	33,024.0
	제3종일반주거지역	33,024.0

- 2)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지구명	지구의세분	위치	면적(㎡)	연장(m)	폭원(m)	최초결정일	비고
경관지구	방배로	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	방배역~경남아파트 앞 삼거리	27,406	700	양측18	2019.4.18	-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결정 구분	규모			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유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신설	소로	1	1	10	211	방배동 1009-2대	방배동 1011-1대	일반 도로	-	-	-
신설	소로	3	1	6	58	방배동 1036-1	방배동 1036-4	일반 도로	-	-	-

■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로 1-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구역내 도로 확폭 및 신설 - B = 6~10m → 10m - L = 211m 	•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및 신설
-	소로 3-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도로 신설 - B = 6m - L = 58m 	•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

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시설 구분	시설의종류	위 치	면적(㎡)	비고
	관리사무소	획지	82	-
	경비실	획지	40	-
공동이용시설	합 계	획지	5,610	-
	경로당	"	510	「서울시 주택조례」 [별표1] 500~1,000세대 미만 : 225㎡ 이상
	어린이놀이터	"	1,200	-
	어린이집	"	1,000	「서울시 주택조례」 [별표1] 500~1,000세대 미만 : 330㎡ 이상
	주민운동시설	"	300	-
	작은도서관	"	600	「서울시 주택조례」 [별표1] 500~1,000세대 미만 : 158㎡ 이상
	기타 주민공동시설	"	2,000	휘트니스 등

※ 「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」에 적합하게 설치하고, 「건축법」 등 관련법령과 기준 적용

마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1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신설	방배동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33,024.0	획지	31,966.75	방배동 1015번지일대	7	-	-	7	-	-

2) 건축시설계획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(%)		높이 (최고층수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정비계획	예정 법적상한		
신설	방배동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33,024.0	획지	31,966.75	방배동 1015번지 일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	50 이하	239.86 이하	299.99 이하	83.5m이하 (27층이하)	-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		○ 건립규모									
		구분		세대수			비고				
		합계		827 (100.0%)	679 (82.1%)	148 (17.9%)	-				
		계		827 (100.0%)	679 (82.1%)	148 (17.9%)	-				
		60㎡이하		221 (26.7%)	73 (8.8%)	148 (17.9%)	-				
		60~85㎡이하		350 (42.3%)	350 (42.3%)	-	-				
85㎡초과		256 (31.0%)	256 (31.0%)	-	-						
		- 85㎡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: 69.04%									
심의완화 사항		○ 허용용적률 완화(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)									
		구분		인센티브용적률		비고					
		합계		20%		-					
		장수명주택		10%		-					
		에너지효율인증2등급,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		4%		-					
		지능형 건축물 4등급		6%		-					
		○ 소형주택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) - 정비계획용적률(239.86%) → 예정법적상한용적률(299.99%)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측 : 획지 경계로부터 3~6m • 서측 : 획지 경계로부터 6m • 남측 : 획지 경계로부터 3m • 북측 : 획지 경계로부터 3~9m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도부속형 공지 : 4~6m - 보도형 공지 : 3m 									
기타사항에 관한 계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북방향의 공공보행통로 : 6m - 동서방향의 공공보행통로 : 7m 									

※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,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

■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

구 분	산 정 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
토지이용 계획	계 (구역면적)	획지 (공동주택)	계획정비기반시설 (도로)	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·공유지	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·공유지																					
	33,024.0m ²	31,966.75m ²	1,057.25m ²	-	-																					
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-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·공유지 면적 -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·공유지 면적 = 1,057.25m² - 0m² - 0m² = 1,057.25m² · 순부담 : 3.2% 																									
개발가능 용적률 산 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β = 210% + 20% = 230% ※ β = 인센티브 항목(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인센티브 용적률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합 계</td> <td>20%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장수명주택</td> <td>10%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에너지효율인증2등급,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</td> <td>4%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지능형 건축물 4등급</td> <td>6%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× (1 + 1.3 × α) = 230 × (1 + 1.3 × 0.033) = 239.86% 이하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α = 공공시설제공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</td> </tr> <tr> <td>= 1,057.25m² / 31,966.75m² = 0.033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비계획용적률 = 239.86% 이하 					구 분	인센티브 용적률	비 고	합 계	20%	-	장수명주택	10%	-	에너지효율인증2등급,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	4%	-	지능형 건축물 4등급	6%	-	α = 공공시설제공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	= 1,057.25m ² / 31,966.75m ² = 0.033				
	구 분	인센티브 용적률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20%	-																								
장수명주택	10%	-																								
에너지효율인증2등급,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	4%	-																								
지능형 건축물 4등급	6%	-																								
α = 공공시설제공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																										
= 1,057.25m ² / 31,966.75m ² = 0.033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건축소형주택 비율 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건축소형주택(전용면적 60m²이하) 건립 용적률 및 연면적 산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주요내용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예정법적상한용적률</td> <td>299.99% 이하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정비계획 용적률</td> <td>239.86% 이하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재건축소형주택 의무 건립</td> <td>용적률</td> <td>(299.99%-239.86%) × 50% = 30.065% 이상</td> <td rowspan="2">-</td> </tr> <tr> <td>연면적환산</td> <td>30.065% × 31,966.75m² = 9,610.8m² 이상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재건축소형주택 공급 계획</td> <td>공급 연면적</td> <td>(143세대 × 64.49m²) + (5세대 × 84.49m²) = 9,644.52m²</td> <td rowspan="2">-</td> </tr> <tr> <td>공급 용적률</td> <td>30.17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구 분	주요내용	비 고	예정법적상한용적률	299.99% 이하	-	정비계획 용적률	239.86% 이하	-	재건축소형주택 의무 건립	용적률	(299.99%-239.86%) × 50% = 30.065% 이상	-	연면적환산	30.065% × 31,966.75m ² = 9,610.8m ² 이상	재건축소형주택 공급 계획	공급 연면적	(143세대 × 64.49m ²) + (5세대 × 84.49m ²) = 9,644.52m ²	-	공급 용적률	30.17%
	구 분	주요내용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
예정법적상한용적률	299.99% 이하	-																								
정비계획 용적률	239.86% 이하	-																								
재건축소형주택 의무 건립	용적률	(299.99%-239.86%) × 50% = 30.065% 이상	-																							
	연면적환산	30.065% × 31,966.75m ² = 9,610.8m ²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
재건축소형주택 공급 계획	공급 연면적	(143세대 × 64.49m ²) + (5세대 × 84.49m ²) = 9,644.52m ²	-																							
	공급 용적률	30.17%																								

바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계획내용	비고						
환경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, 내부유입을 최소화 •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,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•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•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	-						
재난방지	<table border="1"> <tr> <td>화재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,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•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</td> </tr> <tr> <td>수해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자연토양유지를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•수해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 및 저류조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</td> </tr> <tr> <td>교통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</td> </tr> </table>	화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,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•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	수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자연토양유지를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•수해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 및 저류조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	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	-
	화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,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•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						
	수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자연토양유지를 통한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•수해방지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 및 저류조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						
교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							

아. 정비사업 시행계획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 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관리처분방식	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	방배 임광1·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예정)	현황 : 418세대 계획 : 827세대 (증) 409세대	-

자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정비구역 주변현황	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대상지 동측으로 상문고, 신중초, 북측으로 서울고가 입지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은 상문고등학교로 약 200m 떨어져 있음 •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2조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•추후, 동법 제47조(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)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•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,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	-

차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분	가구	면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 치	면 적(㎡)	
합계		31,966.75	-	31,966.75	-
1	-	31,966.75	방배동 1015번지 일대	31,966.75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카.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

1)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건립위치	부지면적(㎡)	동수	세대수	세대규모		비고 (연면적)
				전용(㎡)	공급(㎡)	
방배동 임광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31,966.75	2	143(96.6%)	44.99	64.49	계획 : 9,644.52㎡ (기준 : 9,610.8㎡이상)
			5(3.4%)	59.99	84.49	

※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

구분	심의결과	심의의견	비고
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(2018.7.18)	수정 가결	<p>※ 금회 상정(안)에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</p> <p>▶ 수정사항</p> <p>1. 용적률(기준 210%, 허용 230%, 정비계획 239.86%, 법적상한 299.99%), 정비기반시설(도로 1,057.25㎡), 순부담(3.3%), 높이계획(최고 27층 이하, 남측 주동 24층 이하), 세대수(827세대, 소형임대 148세대 포함), 공공보행통로계획(2개소)등은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.</p> <p>▶ 조건사항</p> <p>1. 동서방향 공공보행통로계획 관련 대상지 내·외부 지형단차, 대상지 동측 구역계 밖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위치 및 선형 등을 조정할 것.</p> <p>2.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소형임대주택 배치계획은 소셜믹스 측면에서 조정 검토.</p>	

II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-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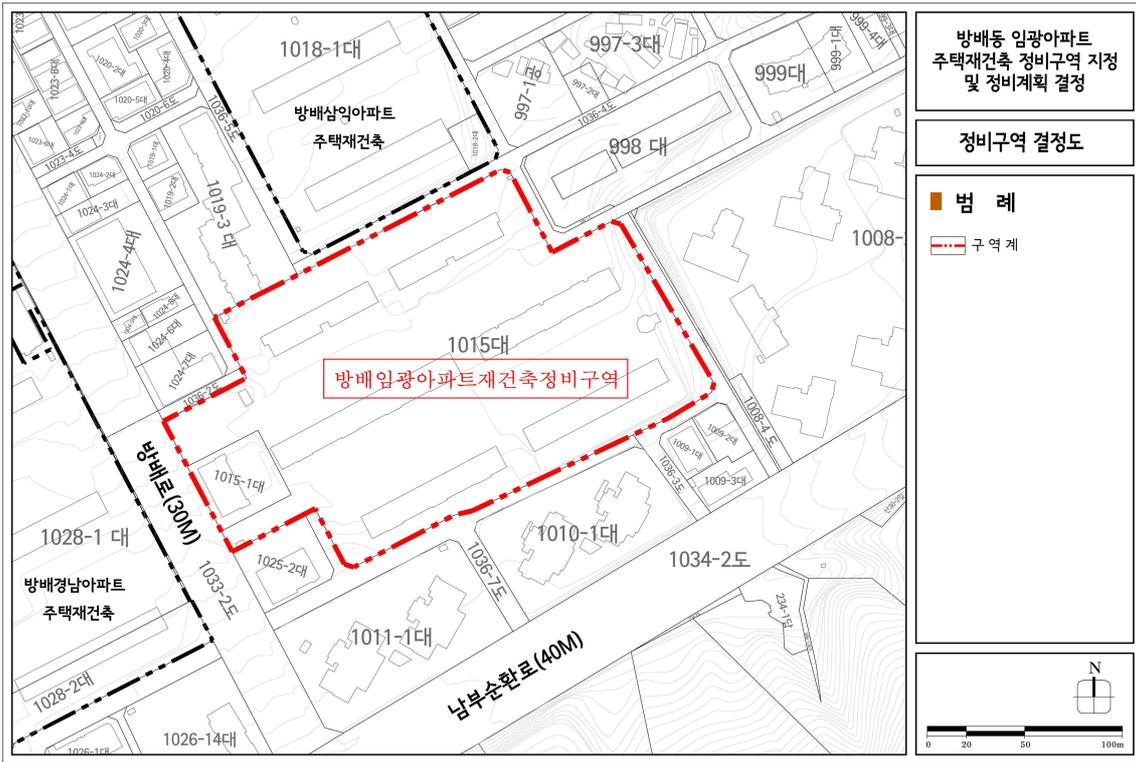
III. 열람장소
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(☎2133-7142)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(☎2155-7349)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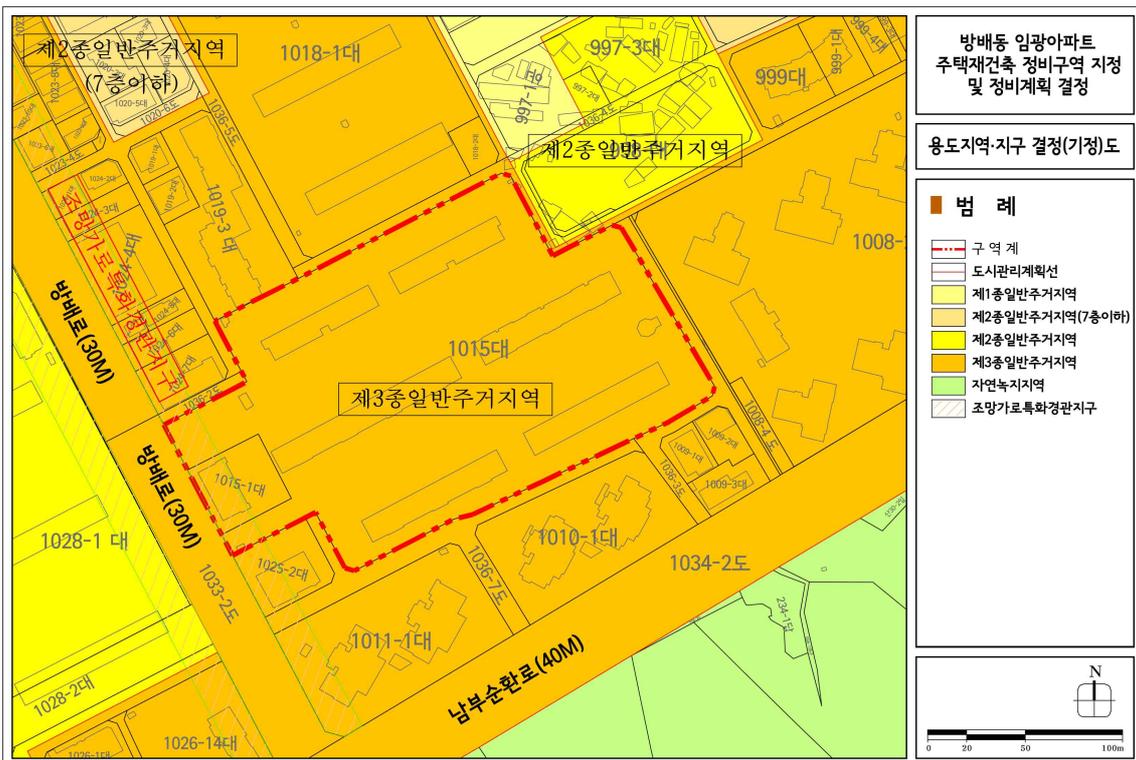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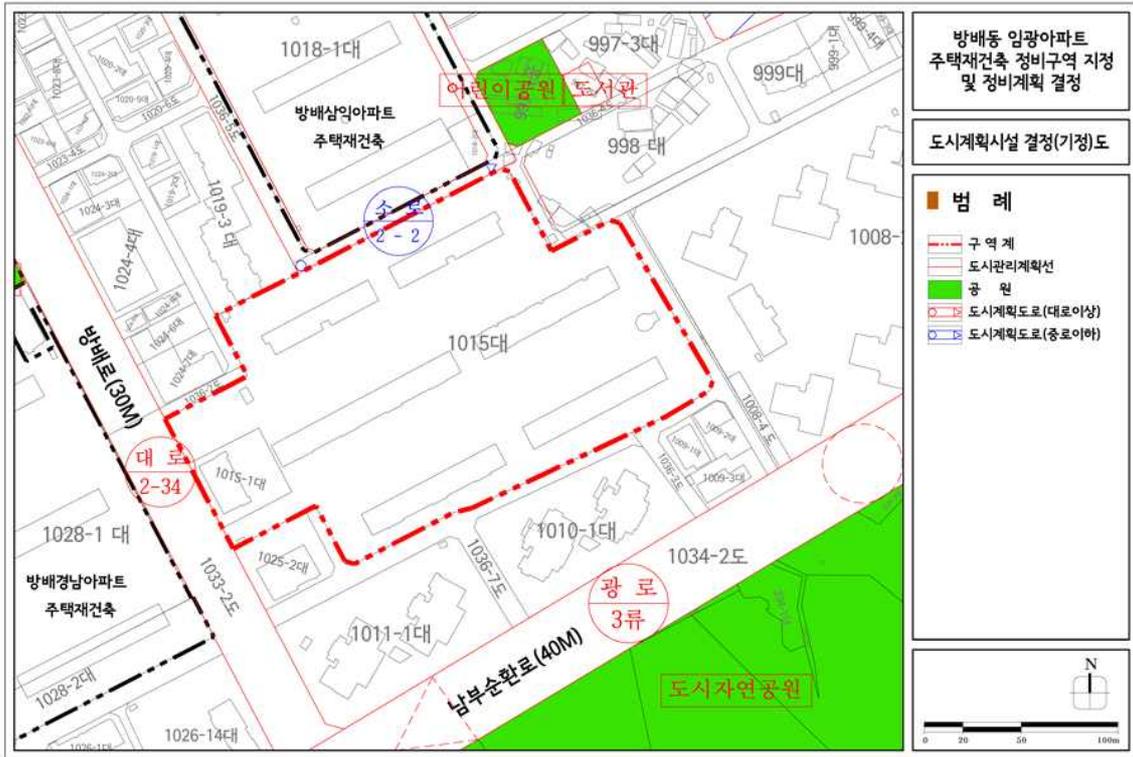
■ 정비구역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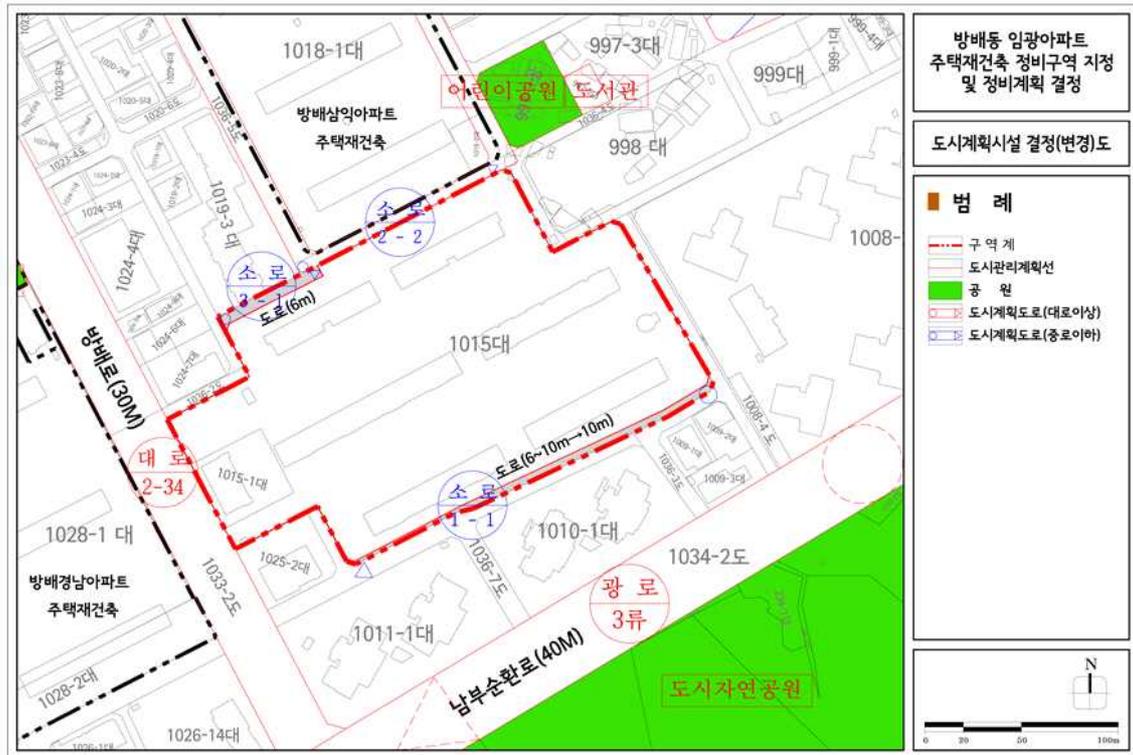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(변경없음)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기정)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(변경)



정비계획 결정도

